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60	26	1991. 12. 5	중재 김 건

의 안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본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

제의취지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권 확충과 저렴한 공적자금의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< 참고사항 >

제외관계 범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( 생 략 )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영탁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~⑥

( 생 략 )

[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(안)]

(붙임)

연	개	비 고
<p>제1조~제2조 ( 생 략 )</p> <p>제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&lt;별표&gt;의 "여신금지부분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/p>	<p>제1조~제2조 ( 현행과 같음 )</p> <p>제3조(여신의 금지) ( 현행과 같음 )</p>	
<p>1~3. ( 생 략 )</p> <p>( 신 설 )</p>	<p>1~3. ( 현행과 같음 )</p> <p>4.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사업관련 여신 (1991년 11월말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)</p>	<p>o 1991년 11월말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개발사업관련 여신을 금융기관 여신금지대상에서 제외</p>
<p>제3조의2~제12조 ( 생 략 )</p> <p>( 신 설 )</p>	<p>제3조의2~제12조 ( 현행과 같음 )</p> <p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1991. 12. 6 부터 시행한다.</p>	<p>o 시행일자 명시</p>